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17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3
나. 관계기관 의견	5
다. 검토의견	8
<참고> 한국4에이치 연혁	24

I. 이만회의의원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0. 25.

다. 회 부 일 : 2024. 10. 28.

2.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4에이치활동은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조의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과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4에이치 관련 정책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4에이치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 미래세대와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3. 주요내용

가. 법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함(안 제1조)

- 4에이치활동 참여자가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

나. 4에이치활동 대상 확대에 따라 4에이치활동의 주체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제2호)

4.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목적을 대한민국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4에이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현재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활동 지원 대상에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바탕으로 동 법의 정의조항에서 4에이치활동을 “4에이치이념에 근거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및 청년농업인의 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또한 개정안은 동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추가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u>청소년</u> 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u>청소년</u> 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u>국가발전</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u> 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 ----- ----- <u>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u> -----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u>근거한</u>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u><신 설></u>	제2조(정의) ----- ----- <u>뜻은</u> -----. 1. (현행과 같음) 2. ----- -- <u>근거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및 청년농업인의</u>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촌진흥청

현행법에서 4에이치 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4에이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 활동 대상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으로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법제처

현행 제1조에서는 4에이치 활동의 대상으로 청소년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4에이치 회원 활동 연령이 7세부터 39세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은 기존의 청소년에 더하여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그 적용 대상을 제2조(정의)에서 어린이·청소년·청년 및 청년농업인으로 나누어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지¹⁾ 여부와 적용 대상

1) <참조 입법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중 청년과 청년농업인의 개념상 중복성 여부를 살펴본바,

대상별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지와 관련하여, 현행 제2조에서는 ‘4에이치’ 및 ‘4에이치활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나머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전체 조문이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개정 내용은 집행 현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없어도 집행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처의 개정안과 같이 제2조에 대상자를 구분하여 정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음으로, 4에이치활동 대상 중 청년과 청년농업인의 개념상 중복 여부에 있어 농촌진흥청은 청년의 연령을 25세부터 34세까지로 청년농업인의 연령은 35세부터 39세까지로 나누어 설정·집행하고 있고,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두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4에이치활동 회원의 모든 대상 연령대(7세부터 39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실제 제도 운영 및 집행 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과 청년농업인의 중복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생략)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한국4-H본부

법률 적용 대상을 현실화하여 4에이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에이치 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임.

4)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²⁾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 과학화, 농민권익 신장, 복지농촌건설, 농업발전 등의 활동을 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4에이치 활동대상을 학생 4에이치(초등, 중등, 고등학교)·대학 4에이치(대학교)와 청년농업인이 4에이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2)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

-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 설립 시기 : 1987년 12월
- 조직
 - 중앙회-시도연합회장(17개)-시·군연합회(167개)-읍·면회(1,500개)-회원(약14만명)
- 5대 지표
 -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화합·단결하는 조직 ○ 농정개혁과 농권실현
 - 통일농업시대의 개척 ○ 세계속의 농업경영인
- 역점 사업
 - 회원 및 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 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대선 대응활동
 - 조합장 공명선거 운동 및 지속적인 협동조합 개혁운동
 - 자유무역 협상 진행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활동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2024.12.5. 제출)

다. 검토의견

1) 4-H 활동 연령 조정 등 목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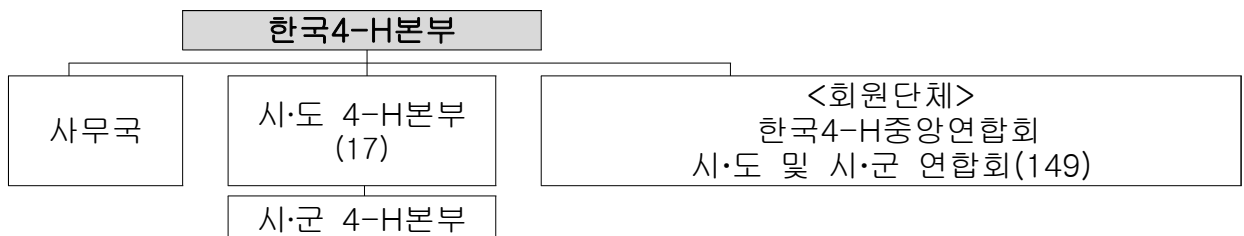
① 4-H 활동 개요

4에이치활동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려는 활동임³⁾.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4에이치법’)」을 근거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주관단체로 지정받은 한국4에이치 본부⁴⁾는 학생, 대학,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등 교육훈련 실시, 전국학생 모의국회, 야영교육·경진대회 등 개최, 국제 교환 운영을 통한 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024년 12월 기준 한국4에이치에 소속된 조직은 1,318개 지회, 회원의 규모는 49,147명에 이르고 있음.

<한국 4에이치 조직>



※ 자료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제출(2024.11.29.)

3) 4-H운동은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되어 1947년 3월 당시 경기도 초대 지사 구자옥과 4-H출신 군사고문관 앤더슨 대령의 요청으로 처음 시작

4)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4에이치 개요>

□ 연 력

- 1954. 11 창립(당시명칭 : ‘한국4-H구락부 중앙위원회’)
- 1963. 04 4-H국제교환훈련 실시 및 ‘한국4-H신문’ 창간
- 1974. 02 ‘한국4-H연맹’ 으로 개칭
- 1979. 02 ‘한국새마을청소년후원회’ 로 개칭
- 1988. 10 ‘한국4-H후원회’ 로 개칭
- 2001. 02 ‘한국4-H본부’ 로 개칭
- 2005. 한국글로벌바동지회·한국4-H연맹이 한국4-H본부로 통합
- 2008. 12 4-H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

□ 조직 및 회원현황

- 한국4-H 규모 : 1,318개회, 49,147명 * 4-H운동 시작 : 1947년
- 한국4-H본부: 17개회 시도본부(11,574명)
- 회원: 청년농업인 149회(8,656명), 대학 27회(1,766), 학생 1,125회(27,151)
- 본부 기구임원(총 회원 11,574명/중앙, 도, 시군본부 회원)
 - 임 원 : 29명(회장 1, 부회장 3, 이사 23, 감사 2)
 - ※ 모든 이사는 비상근명예직, 임기 3년, 연임가능(단, 회장은 단임)
 - 대의원 : 178명(사·도·군4-H본부 대표, 4-H단체대표, 후원회원 등)
 - 상근직원 : 9명(사무부총장 1명, 부장 2, 직원 6)

□ 기능

- 「한국4에이치 활동지원법」(’07.12 제정)에 따라 주관 단체로 지정받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4-H육성사업을 수탁 수행

□ 주요 활동 내용

- 교육훈련 : 농심함양 및 영농기술교육, 지도력배양교육 등
- 시민교육 : 전국학생모의국회, 대학생(청년)국회토론회 등
- 교육행사 :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경진대회(격년), 한마음대회 등
- 회의생활 : 총회(연시·연말),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등
- 국제교류 : 국제교환운영, 글로벌4-H네트워크 활동, 국제행사 등
- 기타활동 : 회지발간, 불우이웃돕기, 농산물 판매사업, 환경 가꾸기 등

※ 자료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제출(2024.11.29.)

「4에이치법」은 농촌진흥청이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온 한국 4-H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음.

2007년 당시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건하에서 민간기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4에이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4에이치법」이 제정되었음⁵⁾.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받은⁶⁾ 한국4-H 본부는 청소년의 농심 함양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리더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

2007년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1조(목적) 규정은, 1947년부터 60여년간 추진되어 농촌 근대화에 크게 기여해 온 농촌 청소년운동(4에이치운동)을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3130) 검토보고서

6)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② 농촌진흥청의 4-H 활동 지원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7)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008년 <한국 4-H 활동 지원 기본시책>을 제정하였고, 2011년 1차 개정, 2017년 2차 개정을 한 바 있음.

4에이치 활동 관련하여 최초 4에이치 회원 연령은 기존 10세~20세였으나, 1980년 만 13~29세로 조정된 이후 2001년 만 9~29세로 조정하였고,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 개정을 통해 2011년에 만 9~34세로, 2018년에 만 7~39세로 각각 조정하였음.

< 4에이치 회원 연령 조정 과정 >

년도	회원 연령	근거
1952년	10세 ~ 20세	이사회에서 연령기준을 정함
1963년	13세 ~ 24세	
1981년	13세 ~ 29세	
2001년	9세 ~ 29세	
2011년	9세 ~ 34세	한국 4-H 활동 지원 기본시책 개정
2018년	7세 ~ 39세	

※ 자료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2024.12.7. 제출)

7)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령 조정 과정을 거치며 한국4-H본부의 주요 사업 내용도 확대되었고, 연령과 학업여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4에이치(7~18세), 대학 4에이치(19~29세), 청년농업인 4에이치(19~39세)로 연합조직을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음.

학생 4에이치 회원에 대하여는 전국 학생 4에이치 과제 경진대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전국 학생 4에이치 연합회 중앙위원 리더십캠프 등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대학 4에이치 회원에 대하여는 일반대학·농과계 학생들 대상으로 전국 대학 4에이치 리더십캠프, 농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리더십을 갖춘 인재, 농업후계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청년농업인 4에이치 회원에 대하여는 청년농업인 정책토론, 전국 농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전국 청년농업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인력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한국 4에이치 활동 성장단계별 구분 및 주요 프로그램>

□ <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 기본시책>에 따른 4-H 회원 성장단계별 구분과 활동목표 및 연합조직

성장단계	4-H활동조직		활동 목표	연합조직
학생4-H (7~18세)	초등4-H(동아리) 중등4-H(동아리) 고등4-H(동아리)	⇒	배우고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청소년	학생4-H연합회
대학4-H (19~29세)	대학 및 지역 4-H회(클럽)	⇒	창의적 청년리더	대학4-H연합회
청년농업인4-H (19~39세)	청년농업인.일반4-H회 4-H연합회	⇒	농업·농촌을 이끌어 가는 청년농업인	시도4-H연합회 청년농업인연합회

□ 주요 프로그램

○ 학생 4에이치 회원 육성

- (주요 프로그램) 전국 학생4-H과제경진대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및 모의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 전국 학생4-H연합회 중앙위원 리더십캠프 등

○ 대학 4에이치 회원 육성

- (주요 프로그램) 대학4-H리더십 캠프, 청년 미래비전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농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 청년 4에이치 회원 육성 * 정부부처·지자체 청년정책 위원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주요 프로그램) 청년농업인 정책토론, 전국 농업경진대회, 소비자 활동 프로그램, 해외 협력사업 등

육성단계	활동목표	주요활동과제
 유소년 (초등) 만 7~12세	▶ 4-H덕목 함양 ▶ 리더십 함양 ▶ 인간 / 환경 / 농업 및 자연 친화적 태도 형성	▶ 4-H인성교육 ▶ 동식물기르기 ▶ 도농교류체험 ▶ 과제학습과 교육행사
 청소년 (중고) 만 13~18세	▶ 4-H활동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건강한 청소년 ▶ 청소년리더십 배양 및 자연·인간·농업·농촌에 대한 사랑의 실천	▶ 인성/진로교육 ▶ 도농교류체험 ▶ 과제학습과 교육행사 ▶ 국제교류
 대학4-H 만 19~29세 대학재학 청년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농업과 국가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리더로의 성장	▶ 인성/진로교육 ▶ 도농교류 및 농촌봉사 ▶ 과제학습과 교육행사 ▶ 국제교류
 청년농업인 만 20~39세	▶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청년지도자로 성장	▶ 리더십과 인간관계훈련 ▶ 농업전문교육 ▶ 지역사회활동과 4-H활동지도 ▶ 국제교류

○ 75개국 4에이치 글로벌 협력 및 교류 * 75개국 글로벌 4-H 부의장(한국)

- (주요 프로그램) 4-H 국제교환 프로그램, 4-H 한·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미국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75개국 글로벌 캠프, 아시아4-H컨퍼런스 등

* 개최현황(한국): 국제 글로벌 대회(1회, '14), 아시아 대회(1회, '12), 글로벌 청소년 대회('18)

※ 자료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제출(2024.11.29.) 및 한국 4-H 본부 홈페이지(<https://www.korea4-h.or.kr/>)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4-H본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비 등으로 지원해 왔으나(2023년 12억 200만원 지원), 동일한 단체에 대하여 5년 이상 관행적인 예산을 지원해온 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사업 정비에 따라 2024년 4에이치 단체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 한국 4에이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21~'24년) >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1,044	1,202	1,202	-
(사)한국4-H본부	524	682	682	-
지방자치단체	520	520	520	-

※ 자료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2024.12.7. 제출)

※ 한국 4-H 본부로 지원한 예산은 학생 4-H, 대학 4-H, 중앙연합회의 교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한 예산은 농촌진흥청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자체에 편성·집행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도나 시군연합회에서 수행하는 교육 운영비 등에 대하여 지원한 것임.

③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과 현재 4에이치 활동의 실제 활동을 반영하여 동 법의 목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지원 대상을 현행법에 따른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법의 목적 규정에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4에이치활동은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부합하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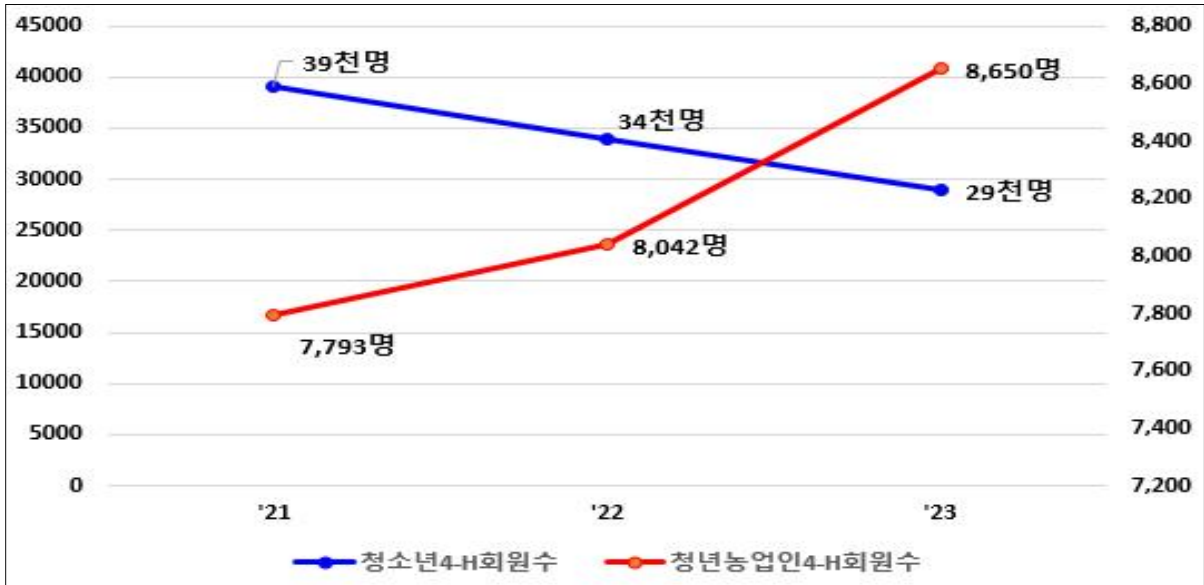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을 근거로 활동 대상을 넓혀온 것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전통적으로 4에이치 운동은 농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리더십 활동에 초점을 두어 왔다고 설명함.

그러나 농촌 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농촌 청소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범주에만 머물러서는 조직 활성화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현재 청소년 4에이치 회원수는 ('21) 39천명 → ('22) 34천명 → ('23) 29천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청년농업인 4에이치 회원수는 ('21) 7,793명 → ('22) 8,042명 → ('23) 8,65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청년농업인[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40세미만의 경영주]의 경우, 전국 40세 미만 경영주는 통계청 총조사 결과('20년 기준) 1만 2천명인데, 그 중 75%인 9천명이 청년 4에이치 회원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함.

< 청소년4-H 및 청년농업인4-H 회원수 증감 현황 >



※ 자료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제출(2024.11.29.)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를 감안하여 청년 농업인까지 4에이치 활동 범주에 포괄하여 농촌지역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법의 목적 조항에서 4에이치 활동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청년 및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70년간 이어온 ‘농촌 청소년 운동’ 지원을 통해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려는 현행법의 목적과 성격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한편, 기후변화, 고령화, 청년 이탈, 농촌 인구 감소, 국제 식량 시장 변동성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농업·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에이치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

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성장과 진흥”의 의미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기준

한편, 개정안이 규정하려는 어린이, 청년, 청소년에 대하여 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어린이의 보호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법률은 ‘어린이’를 평균적으로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 법률은 ‘아동’을 평균적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아동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어린이·아동 관련 법률		연령
어린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세 미만
	환경보건법	13세 미만
아동	아동복지법	만 18세 이하
	가정폭력방지법	만 18세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만 18세 이하 (아동복지법을 따르도록 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만 18세 미만
	입양특례법	18세 미만인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만 18세 이하 (아동복지법을 따르도록 규정)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	만 18세 이하 (아동복지법을 따르도록 규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소위자료(2024.11.)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권리 증진, 복지 향상, 사회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정책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는 법에서는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청소년 관련 법률	연령 기준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음)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에 따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농약관리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담배사업법	
마약류관리법	
게임산업진흥법	
대중문화산업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연령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 24세 이하인 사람

※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소위자료(2024.11.)

청년의 기준 역시 각 법률의 목적마다 상이한데,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려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려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청년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음.

농어업 분야를 살펴보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농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청년 관련 법령		연령 기준
청년기본법		19세~34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40세 미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법을 따르도록 규정, 40세 미만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원칙: 15세~29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15세~34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청년실업자)		15세~34세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29세

※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소위자료(2024.11.)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에 따르면, 실제 4H 활동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가 7세부터 39세까지임.

이를 감안하면, 동 법의 활동 및 지원 대상을 “어린이(13세 미만, 18세 미만), 청소년(만 19세 미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15세 이상 29세 이하, 39세 이하), 청년농업인(40세 미만)”으로 할 경우 현행 타 법령상의 연령 기준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청년’과 ‘청년농업인’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의미상 중복 여지가 있음.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에 따른 4-H회원 구분과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장단계별로 학생, 대학, 청년농업인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4에이치법」 제정 취지(2007)’ 및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청년’ 대신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연령 및 성장 단계별 개념을 연속성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아동(Childhood) 시기 이후 청소년(Adolescence), 그리고 청년(Youth)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음.

제도·정책·법률 등 공적·공식적 맥락에서 ‘청소년’, ‘청년’과 맞물려 활용하기에 ‘어린이’라는 용어보다는 ‘아동’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계층 구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촌진흥청 및 한국4-H본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u>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u>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u>국가발전에</u>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u> ----- ----- ----- ----- <u>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u> ----- ----- -----.	제1조(목적) ----- ----- <u>아동, 청소년 및 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u> ----- ----- ----- ----- <u>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u>근거한</u>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u>뜻은</u> -----. 2. ----- ----- <u>근거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및 청년농업인의</u> ----- -----.	제2조(정의) ----- ----- <u>뜻은</u> -----. 2. ----- ----- <u>근거한 아동, 청소년 및 청년농업인의</u> ----- -----.

문의처

02)6788-5414

<1940~1950년대>

1947. 03. 경기도 내에 '4-H구락부' 최초 조직

1952. 12. 4-H운동을 정부 농촌청소년지도 시책사업으로 채택

1954. 11. '한국4-H구락부중앙위원회(현 한국4-H본부)' 창립

12. 제1회 4-H중앙경진대회 개최

1957. 06. 농사원 발족, 교도국에 청소년과 설치(4-H육성 추진)

<1960~1970년대>

1962. 12. '전국대학4-H연구회연합회' 결성

1963. 03. 4-H국제교환훈련(IFYE) 실시

06. 「한국4-H신문」 창간

1972. '4-H구락부'를 '새마을4-H구락부'로 개칭

1974. 02. '한국4-H구락부중앙위원회'를 '한국4-H연맹'으로 개칭

1979. 01. '새마을4-H구락부'를 '새마을청소년회'로 개칭

02. '한국4-H연맹'을 '한국새마을청소년후원회'로 개칭

<1980~1990년대>

1980. 12. 4-H회원 연령 만 13~29세로 조정

1981. 10. '새마을청소년회중앙연합회(현 한국4-H중앙연합회)' 결성

1988. 01. 「4-H운동 40년사」 발간

08. '새마을청소년회'를 '4-H회'로 개칭

10. '한국새마을청소년후원회'를 '한국4-H후원회'로 개칭

1990. 06. 한국4-H회관 건립

08. 제2차 아태지구 IFYE대회 개최

1997. 11. 「4-H운동 50년사」 발간 및 기념상 건립

<2000년대>

2000. 한국4-H대상 시상식 실시

2001. 01. 4-H회원 연령 만 9~29세로 조정

'한국4-H후원회'를 '한국4-H본부'로 개칭

2002. 학생4-H회원 잡지 「4-H&푸른세상」 창간

2003. 08. 4-H지도교사 종합과정 60시간 직무연수 시작

2004. 4-H단체를 '한국4-H본부'로 통합

2006. 11. 제1회 전국 학생4-H 과제발표대회 개최

2007. 12.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제정(법률 제8758호)

2008. 12. 한국4-H본부를 '4-H활동주관단체'로 지정

<2010년대>

2011. 12. 4-H회원 연령 만 9~34세로 조정

2012. 08. 제1회 아시아4-H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

2014. 10. 제1회 글로벌4-H네트워크 세계대회 개최

2015. 11. 제1회 세계4-H의날(11월1일) 행사 개최(국가별)

2017. 11. 한국4-H운동 70주년 기념행사

2018. 01. 4-H회원 연령 만 7~39세로 조정

10. 제1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개최

12. 「한국4-H운동 70년사」 발간

2019. 05. 제1회 전국 학생 모의법을 제·개정 제안 공모대회 개최

07. 제1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개최

08. 제2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개최

09. 2019 글로벌 4-H 한마음대회 개최

<2020년~>

2020. 02.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993호)

04. 4-H온라인 프로젝트 학습터(4-H놀이터) 개설

07. 한국4-H신문 인터넷 서비스 실시

09. 제3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개최

10. 4-H청년농업인 디지털 페스티벌 개최

11. 제2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개최

2021. 08. 제3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개최

09. 2021년 글로벌4-H 디지털 세계대회 개최

제4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개최

11. 제49회 4-H중앙경진대회 개최

2022. 08. 2022 4-H중앙야영대회 개최

제4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개최

10. 제4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개최

2023. 01. '한국4-H본부 청년지도자협의회' 결성

09. 제5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개최

10. 제17회 전국 학생4-H 과제경진대회 개최

11. 제50회 4-H중앙경진대회 개최

12. 제25회 한국4-H대상 시상식 개최